

안전인증소식

[Q&A]**전기 · 공산품 안전인증**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KC마크, 자율안전확인제도」 등이 신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에서 응답한 내용 중 꼭 숙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응답을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 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 주의 : 본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협회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Question 조명기구의 모형만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 대상여부

조명기구(호텔침대, 가정용 침대등 스탠드)를 수입하려 하는데 세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기에 문의 드립니다.

-조명기구의 조명이 없이(전구, 전기선) 모형만 수입을 하더라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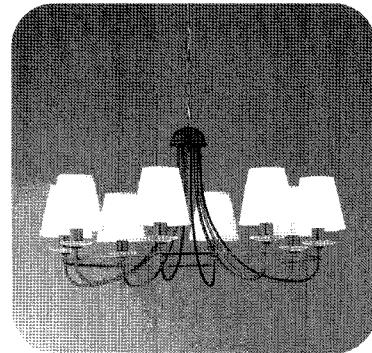
-조명기구(등기구, 스탠드)가 안전인증대상인 것으로 아는데 등기구도 여러 모델이 있지 않 은지? 예를 들어 전압이 틀리든지 모형이 달라서 모델번호 틀리든지, 자속적으로 100여종 이상을 수입하면 각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조명기구의 것만 수입한다면 것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것의 재료가 유리제 품이라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안전검사를 받는다면 완제품 등기구의 안전인증과 것의 안전검사를 각각 별개로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nswer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은 최종제품조립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명기구의 모형(부품)만 수입을 할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동 부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조명기 구를 완성시키는 조립의 경우에는 전기용품 제조에 해당되므로 안전인증을 받아 제조·판매

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되는 부품 그 자체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품목인 경우에는 완제품과 별도로 분리하여 수입하더라도 외국의 제조업체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은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인증을 받은 '기본모델'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제품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관련 별표1(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따른 '파생모델' 등록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완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안전인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제품 등기구에 사용된 부품 그 자체가 안전인증대상 부품인 경우에는 완제품 등기구의 안전인증 시, 동 부품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 여부를 안전인증기관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Q uestion 올드 진공관 라디오 및 리시버 고장제품 안전인증 대상여부

올드(old) 외제 오디오기기(1920년대부터 1970년대에 생산된 제품)의 수리 및 부품을 활용, 제품화하기 위하여 독일로부터 고장제품(폐품)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이 기기들도 전기용품이라서 전기안전검사(형식승인)를 득해야만 세관에서 통관이 된다고 하는데 고장제품도 인증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A nswer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작동이 되는 전기용품에 대해 적용되므로 작동이 되지 아니하는 올드 진공관라디오 및 리시버 고장제품(폐품)의 인증여부에 대해서는 동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동 제품을 수리하여 작동되는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는 같은 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 uestion 다양한 전원공급방식의 온열제품의 인증대상 여부

기존 발열방식이 아닌 면상 발열체를 이용한 각종 온열제품(매트리스, 매트, 돌침대 보료, 소파, 식탁의자 등) 제조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AC에서 DC전환 조절기를 이용한 온열제품 제조 시 조절기가 안전인증을 받으면 본 제품은 DC전원을 이용한 제품인 관계로 인증제외에 해당되는지?
- AC에서 DC전환 조절기의 변환 장치 인증 시에도 동일 상황이 아닌지?
- AC 200V를 AC 50V이하를 변환 시에 이 장치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였을 시의 전기 안전 인증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독립된 직류전원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류 전원장치만 안전인증대상입니다.

직류전원장치와 매트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의 제품은 매트가 안전인증 대상이며, 안전인증 시 직류전원장치는 매트의 부품으로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변압기(AC 220V / AC 50V)를 사용하여 매트를 사용하는 구조의 경우는 변압기와 매트 모두 안전인증대상입니다. 다만, 변압기가 제품에 부탁되거나 내장된 일체형의 경우에는 매트가 안전인증대상이며, 안전인증 시 변압기는 부품으로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Question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면제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서 수출용과 연 구개발용 공산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통관전에 안전인증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공법 제2조5호에서 공산품이란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부분품/부속품을 말하며 7호에서 안전인증이란 판매를 위하여 제조된 공산품의 제품검사 및 공장심사를 하여 공산품에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이라 규정합니다.

질문1) 판매용이 아닌 원구1pc를 샘플로써 해외수출자가 당사에 보내줄 때에 품공법상 판매용이 아니므로 안전인증대상 자체가 아닌지 아니면 시행규칙에 따라 1pc를 통관전에 안전인증면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문2) 판매용이 아닌 원구5pc를 당사의 장식용품으로써 해외수출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품공법상 판매용이 아니므로 안전인증대상 자체가 아닌지 아니면 시행규칙에 따라 5pc를 통관전에 안전인증면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귀하가 문의하신 원구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9호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해당되므로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시 기술표준원에서 지정한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후에 신고필증 번호와 KC마크를 제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품공법 제19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판매용이 아닌 연구, 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와 상기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율안전확인 면제신청을 하면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통해 자율안전확인 신고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관련 신고절차, 신고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자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제품안전/생활용품/자율안전확인>)에서 확인하시거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540) 등 안전인증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자전거 안전인증 기준에 관한 질문

이륜자전거를 수입하려고 하면 모델별로 자율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모델의 기준 중에서 서스펜션별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만일 서스펜션의 종류가 달라지면 또다시 시험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모델을 라인업하면서 프레임이 경미하게 조금 바뀌었는데 이런 경우도 바뀔 때마다 매번 또 시험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nswer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이륜자전거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륜자전거 안전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모델별로 구분되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델별 구분은 차종별, 제동방식별, 차륜호칭별, 기어유무별, 프레임의 형태, 재질별로 구분하고

차체는 서스펜션별로 구분을 하여 안전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차체의 서스펜션 종류가 달라지면 다시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프레임이 경미할지라도 변경이 되었다면 다시 인증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